

신구조문대비표  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[총리령 제1885호, 2023. 6. 9., 일부개정]	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[총리령 제1896호, 2023. 8. 29., 일부개정]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29조의2(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)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신고의 대상은 수입식품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식품등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수입식품등</li> <li>2.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</li> <li>3.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른 서류검사의 대상 중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</li> <li>4. 별표 9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</li> </ol> <p>②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이 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(이하 “통합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,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(이하 “수입신고인”이라 한다)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신고확인증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발급해야 한다.</p> <p>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자동화된 방식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해야 한다.</p> <p>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의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</p> <p>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신고의 자동화된 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.</p>
<p><b>제30조(수입식품등의 검사 등)</b>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,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(이하 “수입신고인”이라 한다)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을 발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30조(수입식품등의 검사 등)</b>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(수입식품등이 제2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,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을 발급해야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<p><b>제33조(검사결과 등의 공개)</b>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b>제30조제1항에 따른</b> 검사결과 적합한 수입식품등의 검사정보. 이 경우 그 공개기간은 해당 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(소비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년) 이내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33조(검사결과 등의 공개)</b>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b>제29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</b> 검사결과 적합한 수입식품등의 검사정보. 이 경우 그 공개기간은 해당 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(소비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년) 이내로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9조의2(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</b>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<b>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(이하 “통합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</b>의 구축·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<b>제49조의2(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</b>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<b>통합정보시스템</b>의 구축·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